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2. 12. 7(수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
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

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사후 관리

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, 안양천 침수정비,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 지원, 선별진료소 전용화장실 운영

5.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 말 조성액@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	비고
		수입®	지출ⓒ	증감 예= b -ⓒ	@=@+@ ₩84	0177
재난관리기금	5,108,616	1,109,176	670,392	438,784	5,547,400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	융자금	지역개발채권	총 조성규모
	조성액ⓐ	미회수 채권(b)	미상환잔액ⓒ	예=@+Ю-ⓒ
재 난 관 리 기 금	5,547,400	0	0	5,547,400

다. 자금 운용 계획

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1,109,176	957,598	151,578
전 입 금	982,974	864,538	118,436
이자수입	126,202	93,060	33,142

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670,392	663,076	7,316
선별진료소 화장실 운영	19,800	23,100	△3,300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금천형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	250,592	239,976	10,616
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	250,000	250,000	0
안양천 침수정비	150,000	150,000	0

6. 검토의견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67조, 제68조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.
-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

전입금 982,974천원, 이자수입 126,202천원 총 1,109,176천원이며,

<u>지출내역은</u>

선별진료소 일반운영비 19,800천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 지원 250,592천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안양천 침수정비 400,000천원 총 670,392천원임.

○ 본 기금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표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관련법령 1부. 끝.

붙임 1 관련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-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, 1,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, 1,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.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 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2. 4. 5.] [법률 제18684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- **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- **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**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 -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. <신설 2016. 1. 7.>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7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8. 23.] [대통령령 제32877호, 2022. 8. 23., 일부개정]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- 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 -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 -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 -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 시하는 안전조치

[전문개정 2020. 1. 7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·관리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29., 2021.3.18>
- 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12.29, 2021.3.18>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<개정 2011.12.29>
 - 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
- 제3조(기금의 용도) 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3.18>
 - 1.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
 - 2.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
 - 3. 재난취약 지역·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자문 결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, 점검이나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
 - 4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
 - 5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 - 6. 법 제3조제6호와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(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)
 - 7.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- 8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- 9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-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
- 2. 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
- 3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
- 4.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
- 5.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
-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